

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

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휴직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,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. 6. 9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

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고용형태	채용분야	채용인원	채용 예정지	담당업무	비고
기간제 근로자	직업상담원 휴직 대체인력	1명	서울남부고용센터 (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)	실업급여 업무지원	직무설명서 (붙임1 참조)

II 응시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자격	· 무관
학력·전공·성별	· 무관
연령	· 제한 없음
기타	·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·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[VII 기타유의사항 결격사유 참고]

III 전형절차 및 일정

○ 전형절차

서류 전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▲ 서류전형 기준,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3~5배수 이내 선발

⇒

면접 전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직업기초능력,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

○ 전형일정

전형일정	일시	비고
지원서 접수	'26.6.9.(화)~6.15(월) (18시까지 접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입사지원서, ②경험 혹은 경력기술서, ③자기소개서 (e-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입력 제출)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<붙임3>서식 → 자필 서명한 스캔본을 e-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에 첨부하여 제출 접수방법: e-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(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수신된 지원서만 유효) ※ 우편, 방문 제출 등 불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6.6.18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면접전형	'26.6.24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*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'26.6.25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채용(예정)	' 26.6.29.(월)	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

※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

IV 우대사항

구분	우대사항				
자격사항 <서류전형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				
경력사항 <서류전형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				
가점부여 <서류 및 면접전형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점항목</th> <th>가점 부여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정가점 (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(10점) 또는 5%(5점) 부여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점항목	가점 부여 내용	법정가점 (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(10점) 또는 5%(5점) 부여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
가점항목	가점 부여 내용				
법정가점 (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(10점) 또는 5%(5점) 부여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 				

가점항목	가점 부여 내용
사회형평 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」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(3점)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▲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
<p>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 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(사회형평 가점 포함시)를 초과할 수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○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법정 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,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, ③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따른 고령자, 준고령자 순, ④ 서류 및 면접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 	

*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

V 접수서류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는 **워크넷 e-채용마당으로 접수**하고 **증빙서류 또한 지원서 제출시 첨부**

제출 서류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사지원서,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, 자기소개서 각 1부 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• 자격증,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(해당자) •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) ※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자료 •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(보훈) 확인 서류 각 1부(해당자) ※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제31조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,24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제35조 </div> •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(해당자)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차상위계층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(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): 한부모가족증명 	<p>원서접수 시 (워크넷 e-채용마당 제출)</p>

※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

※ 경력증명서는 **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**를 첨부하되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

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

VI 근무조건

- 채용예정일: '26. 6. 29.(월)
- * 근무기간: '26. 6. 29.(월)~'26. 9. 17.(목)
(직업상담원 휴직 조기 복귀시 계약만료 될 수 있음)
- 보수수준: 월 1,574,710원
- * 정액급식비(16만원) 별도, 그 밖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
- * 4대 보험 가입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근무시간: 주 5일(월~금), 1일 6시간(09:00~16:00, 휴게시간1시간 포함)
- 근무 장소: 서울남부고용센터
- 주요 업무: 고용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
-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"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"에 따름

VII 기타유의사항
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)하게 됩니다.
-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 기간의 말일까지이며,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,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
○ **결격사유**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7.1.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병역을 기피중에 있는 자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남부지청 고용관리과(☎02-2639-21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